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83

발의연월일: 2022. 9. 23.

발 의 자:한병도·강병원·김영배

김영진 · 김정호 · 김태년

박광온 • 박성준 • 이원택

전용기 · 조승래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에너지는 발전용·가정용·수송용 등 현대사회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활용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이러한 환경적·경제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해 수소생산기술 등 일부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되어 3%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공제율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수소경제사회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 소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의 경우 6%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

는 등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어떤 시설이 포함되는지 전혀예측할 수 없는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법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 등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여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 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한편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대 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상향함으로써 수소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신성장·원천기술과 균형을 맞추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말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국가전략기술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 가) 반도체
 - 나) 이차전지
 - 다) 백신
 - 라) 수소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	
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	
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	
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7}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	
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u>.</u>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 건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1) (현행과 같음)

2)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국가전략기술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중견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 가) 반도체
- 나) 이차전지
- 다) 백신
- 라) 수소
- <u>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분야</u>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② ~ ⑤ (생 략)